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 324 제출년월일 : 2021. 1.

제 출 자: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설치· 운영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·운영 방안을 규정하여 재난·재해 발생시 자원봉사활동 업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군수의 책무 명시(제1조~제2조)

나.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구성(제3조~제4조)

다. 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(제5조~제6조)

라. 지원단 설치 시 고려사항(제7조)

마.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방법(제8조)

바.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(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0. 10. 22. ~ 2020. 11. 1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7조의2제5항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책무) 평창군수는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시책을 마련하고,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제3조(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·운영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6조제2항에 따른 평창군 재난안전대책 본부(이하 "대책본부"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"대책본부장"이라 한다)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(이하 "지원단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
- 제4조(구성)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(이하 "단장"이라 한다)과 단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은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「평창군 자원 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 평창군 자원봉사센터(이하 "자원봉사센 터"라 한다)의 장이 된다.
 -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- 1.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평창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 소속 공무원
- 2. 자원봉사센터의 직원
- 3. 「재해구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
- 4.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
- **제5조(단장의 임무)**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.
 -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,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6조(실무팀의 편성)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.
 - 1. 상황총괄팀
 - 2. 활동관리팀
 - 3. 활동지원팀
 - 4.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

-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,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- **제7조(지원단의 설치)**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 - 1.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
 - 2. 「재해구호법」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
 - 3. 자원봉사자의 규모
 - 4.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
 - 5.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
- 제8조(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)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 현황 및 지역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 에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.
 - ② 대책본부장은 「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」 제7조에 따른 상황 판단 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.
 -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 -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- 제9조(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)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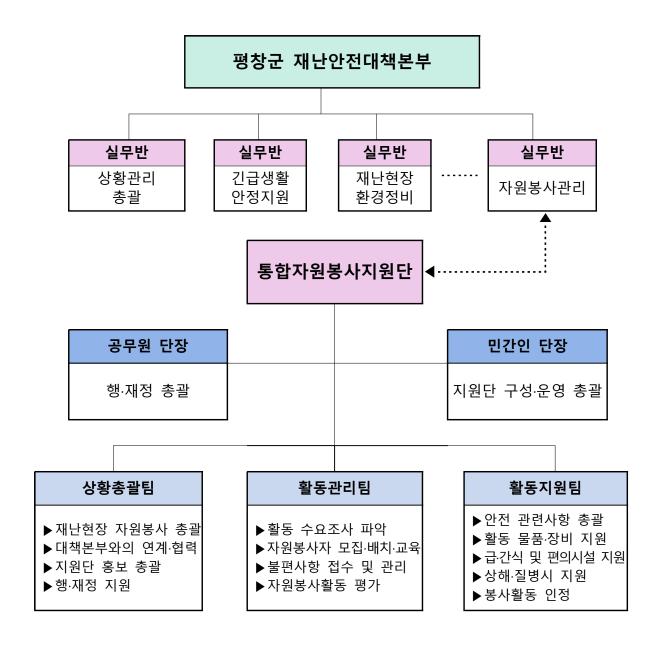
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, 자원봉사 활동 우수 사례, 자원봉사활동의 사진·영상,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 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**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편제**(제6조제2항 관련)



[별표 2]

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업무 구성(제6조제2항 관련)

< 직무분담표 예시 >

팀명(예시)	직위	담당 사무
단장	평창군 행정과장	▶ 지원단 행·재정 총괄
	자원봉사센터장	▶ 지원단 구성·운영 총괄
상황총괄팀	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	▶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
	평창군 행정과 자치행정담당	▶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▶ 대책본부와의 연계(상황 공유·보고 등)
	평창군 행정과 주무관	▶ 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▶ 지원단 관련 행·재정 지원
활동관리팀	자원봉사센터 팀장	▶ 자원봉사활동 수요조사▶ 자원봉사자 불편사항 접수 및 관리
	자원봉사센터 교육주임	▶ 자원봉사활동 관련 모집, 배치, 교육▶ 자원봉사활동 평가(모니터링, 활동기록 등)
활동지원팀	자원봉사센터 팀장	▶ 재난현장 자원봉사 안전 관련 사항 총괄▶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·장비 지원
	자원봉사센터 전산주임	 ▶ 자원봉사자 급·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▶ 자원봉사자 상해·질병시 지원 ▶ 봉사활동 인정(시간 인정,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)

비고

•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지역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.

관련 법령 발췌

- 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(2019.12.3. 공포, 2020.6.4.시행) 제17조의2(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) ① 지역대책 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 봉사지원단을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자원봉사자의 모집 · 등록
 - 2.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
 - 3.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
 - 4.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
 - 5.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
 - 6.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
 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④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통합 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 원단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5제1항제10호 제43조의5(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·활용) ① 법 제34조의 4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 활동계획(이하 "재난대응활동계획"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재난상황관리 기능
 - 2.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
 - 3. 긴급 통신 지원 기능
 - 4.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기능
 - 5.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기능
 - 6. 재난관리자원 지원 기능
 - 7. 교통대책 기능
 - 8.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기능
 - 9. 재난현장 환경 정비 기능
 - 10.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기능
 - 11. 사회질서 유지 기능
 - 12. 재난지역 수색, 구조 · 구급지원 기능
 - 13. 재난 수습 홍보 기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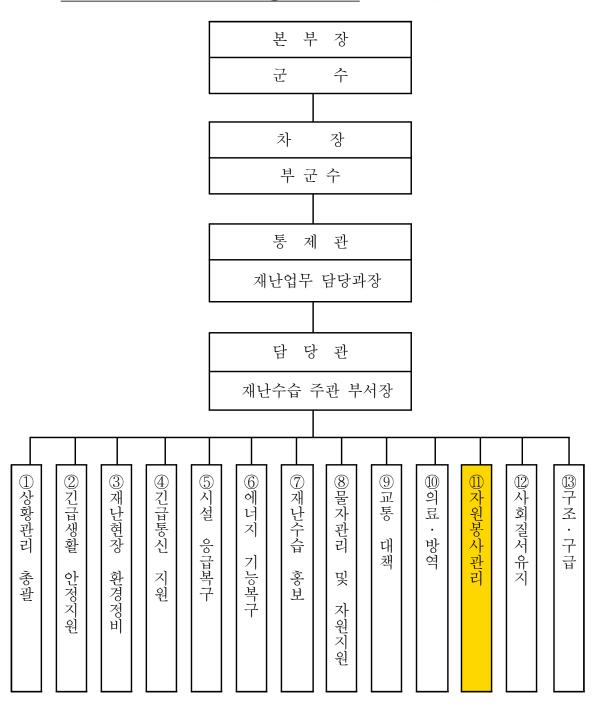
□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제9호

제7조(자원봉사활동의 범위)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
- 2. 지역사회 개발 · 발전에 관한 활동
- 3.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
- 4.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 · 보호에 관한 활동
- 5.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
- 6.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
- 7.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
- 8.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
- 9.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
- 10. 문화·관광·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
- 11.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
- 12.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
- 13.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
- 14.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
- 15.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

□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6조제1항제2호라목 라. 대책본부 구성 체계도는 별표 7과 같다.

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체계도(제6조제1항제2호라목 관련)



[붙임 2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-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훈련비 및 재난·재해 발생 시에 따른 운영비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
 - *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훈련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됨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행정과장 최찬섭
연락처	(033) 330 - 2210